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383호 2018. 9. 7(금)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53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지정된 자”를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가”를 “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지와”를 “현황과”로,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를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지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유

제6조 중 “불후의”를 “훼손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유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계간”을 “회계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인

제10조제2항 중 “긴급한 처리를 요”를 “긴급히 처리가 필요”로 한다.

제11조 중 “제63조를” “제64조”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를 “매각이 필요할”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할것이 있을”을 “필요할”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 및 청·소”를 “실·과 및 소·동”으로,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을 “매수가 필요할”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신축등 신청)”을 “(신축 등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면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정리후”를 “등기정리 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면

제24조의 제목 “(대장 및 도면조제)”를 “(대장 및 도면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선박등”을 “선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의한”을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증·감”을 “증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매월말 기준 익월”을 “매월 말 기준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말”을 “매년 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면

제33조의2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같은 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4조 중 “제42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사용대상공무원이”를 각각 “사용대상 공무원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별지 제23호의2(3)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종목)	면 적 (수량)	현소유자(점유)		비 고
				주 소	성 명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번호	소 재 지 (구, 동)	지번	지목 (주용도)	면적 (㎡)	현 재 용 도	재산분류사항			변경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	변경 사유
						재산 종류	재 산 관리관 변경전	재 산 관리관 변경후		

년 월 일

인계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인계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종목)	수량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회 계 명 :

이동 년월일	코드 번호	재산 종류	구 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용 도	구 조	당초		증		감		증감 사유	등기	
				시군	읍면동	리가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인)

재산종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조	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득년도	경과년수	재평가액		차액 (증감)	비고
		법정동	지번							단가	평가액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구		동			번지		
임	토	지목		건	종목		부	명 칭	수 량	
차		지적	총면적 ㎡		구조		속			
물			임차면적 ㎡		건평	전체 ㎡	물			
건	지			물		임차 ㎡				
소유자주소 · 성명										

차수목적	계약년월일	임차기간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급년월일	적 요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 ] 유상 [ ] 무상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의 대부료 납기는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4조에 따르고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료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대부받는 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대부받는 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1항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기타)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년			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수량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교환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수량						
1건		처분 취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장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대상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계	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매도자”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에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 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

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 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

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어구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 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기관명 인천광역서구

대표자 구청장 ○○○

주 소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양도자"라 한다)와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을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 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인천광역시서구
대표 구청장 ○○○ (인)

(양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서구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천광역시서구”,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서구”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와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일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인천광역시서구”와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서구”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서구”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

대표자 구청장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종 별	재산소재지	지목및구조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2. 재산의 현황

종 별	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			현 용 도	관리상태	연고자 유 무
	년월일	목 적	취득당시가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대 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재지	시 구 동 가(로) 읍 번지 군 면 리										
물건표시	토지	코드번호		건물	번호		기타	명칭		부속사항	
		지목			종목			구조			
		면적	전 체 ㎡		구조			형식			
			대부사용 ㎡		용도			수량			
					면적	전 체 ㎡					
						대부·사용 ㎡					
적 요											

허가번호	사용목적	계약(갱신) 년월일	기 간	대부사용료액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금액	징수 년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			평가가격		비고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 (B)	금액 (A×B)	
								○○단체	○○조합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 정 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2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① 위 치	시 구 동 번지 호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명	(정규)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속건물		
	건 평				
	구 조				
	건축년도 (내용년한)				
	소유구분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신축계획

①위 치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 · 공유지 ㎡, 사유지매입 ㎡)							
	건물	계		본 관			부 속 건 물		
		㎡		㎡	구조		㎡	구조	
③총사업비		계		본 관		부속건물		부대시설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계	교부세		도 비		시 · 군비		청사매각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계	목 재	샷 시	창호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⑥신축단비		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추진계획(상황)

제 목	추 진 일 정	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	평면도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위 치		취득일자	
면 적	대지	구 조	조
	건물		층

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	허 가 일 자	취 소 일 자	비 고

[별지 제23호의2(1)서식]

(앞면)

<table>
<tr><td colspan="8">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td></tr>
<tr><td rowspan="2">대상자</td><td>① 성 명</td><td colspan="2"></td><td>②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2"></td><td>④ 전화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8">⑤ 부과내용</td></tr>
<tr><td colspan="3">재 산 의 표 시</td><td rowspan="2">점유면적
(㎡)</td><td rowspan="2">부과기간</td><td rowspan="2">변상금
[예상]
(원)</td><td rowspan="2">비 고</td></tr>
<tr><td>소 재 지</td><td>지 목</td><td>지 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_____귀 하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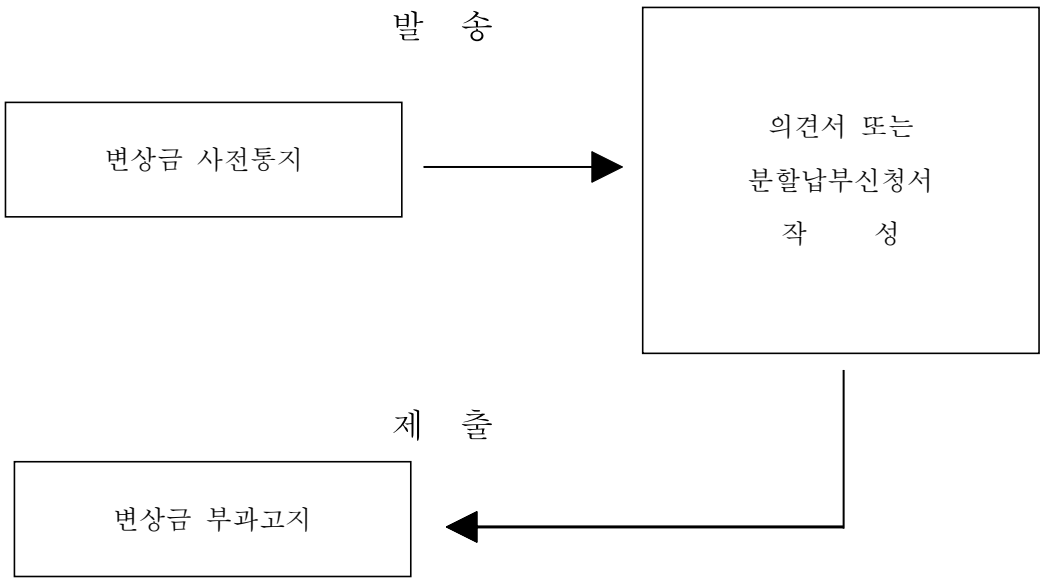

[별지 제23호의2(2)서식]

변 상 금 사 전 통 지 에 대 한 의 견 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서구 공유 재산관리 조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호의2(3)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 의표시		분납형식	비고
소 재 지	점유면적(㎡)		
		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	회차	납부일	변상금 (원)	연 부 이 자 (원)	합 계	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2. 사용 신청관사의 표시 성명

관사번호	관리번호	소 재 지	면적		비 고
			대 지	건 물	

3. 사용신청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20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인 ○○○ 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수탁자"는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수탁자"는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 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 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

"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천광역시서구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위 반 행 위	과징금액	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50%	30%	감경 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	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공통기준 적용 [별표2]	판매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판매액이 1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판매액이 1만원 미만	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판매액이 3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인원이 5인 미만	출입인원이 5인 이상 10인 미만	출입인원이 10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별표 2] 공통기준: 감경 50% 적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확정처분을 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6. 만 65세 이상의 고령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장기구호대상자
8.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9. 만 15세 미만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10.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나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
	위반일자	행정처분일자	위반내용

감경 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경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위반일자		위반내용	
감경처분	감경사유			
	감경내용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감 경 처분일	업소명	인적사항			위반일자 및 내용	감경 사유	감경금액 (천원)
		성명	생년 월일	주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